

2019년 제11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2019년 5월 7일

1. Republic of Ivory Forest (“RIF” 또는 “아이보리국”)와 Federal Republic of Sunnyvale (“FRS” 또는 “서니베일국”)은 서로 인접한 국가들이다. 두 나라는 모두 UN 회원국이다. 인접국으로서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상호간 교류가 있으나 양국 관계가 반드시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간 이런 저런 계기로 표출된 RIF의 호전적인 외교정책과 지속적인 군비증강으로 인하여 FRS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FRS 역시 이에 대응하여 군비를 강화하자 RIF는 지역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라며 이를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2. 특히 5년전 RIF 군부 지도자가 RIF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군부가 국가 운영에 밀접히 관여하고 있다. FRS 정부는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유엔 총회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이러한 RIF의 국내 정세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양국 관계는 최근 발생한 FRS 정부의 RIF 대사관 감시 및 RIF 외교관 출국금지 사태로 인하여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3. 군부가 지배하는 정부가 출범하자 이에 반대하는 RIF 야당 지도자들은 일부 해외로 망명하였다. 망명을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RIF 국민 상당수도 현 RIF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RIF 정부는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반정부 인사 및 반정부 운동들이 여러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여 오고 있다.
4. 인접국인 FRS에도 RIF 국적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도 현 RIF 정부에 대한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FRS 내에서 RIF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자 양국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RIF에 대한 비난을 국제 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FRS의 정책과 맞물려 FRS 내 RIF 정부에 대한 반대 기운은 점차 커지고 있다. FRS 정부는 최근 RIF 야당 지도자 수명에 대한 정치적 망명신청을 허용하였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FRS의 국영 TV와 인터뷰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5. FRS 내 이러한 반대 운동의 핵심 인물은 과거 RIF 녹색개혁당의 당수를 지내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던 David Goodwill이다. Goodwill은 현재 5년째 FRS 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은 여전히 RIF에 거주하고 있다. Goodwill은 FRS 정부 및 의

회의 여러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FRS의 정책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2018년 5월 8일 오후 Goodwill은 자신의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자 그 갱신을 위하여 FRS 수도 Kimberly에 소재한 RIF의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여권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부는 대사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사관 경내로 들어간 Goodwill은 그날 자택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RIF 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CCTV에 Goodwill이 대사관 경내로 들어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나 나오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Goodwill의 실종 사건은 FRS 내 국내 언론 및 전 세계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FRS 내 RIF 반정부 그룹 내에서도 그의 소재를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RIF의 소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7. 한편 RIF는 자신의 관련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2018년 5월 11일 RIF 정부 대변인은 RIF 정부가 Goodwill의 실종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대신 RIF 정부는 Goodwill이 개인적인 이유로 종적을 감춘 것 같이라며 FRS 정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8. 한편 Goodwill의 소재를 확인하고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RIF 대사관 주변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중 일부는 대로변과 대사관 주변에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 일부는 주변에 위치한 인접 건물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CCTV는 고층 빌딩에 설치되어 RIF 대사관 주변을 보다 정밀하게 조감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대사관 경내를 촬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CCTV의 추가 설치는 Kimberly에 소재한 다른 나라 대사관 주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9. Goodwill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 2주가 경과한 후 RIF 대사관 내에서의 일련의 상황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FRS 언론에 배포되었다. 녹음 내용은 Goodwill이 RIF 본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원들과 나누는 대화를 담고 있다. RIF 정부기관원들은 Goodwill에게 본국으로 귀국하라고 요청하였다. Goodwill이 이를 거부하자 기관원 중 한 명은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언급도 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에서 확인되었다. 가족과의 통화는 정부기관원이 공관 전화를 통하여 직접 연결하였다. 다만 신체적 위협 및 폭행 등의 내용은 녹음된 대화 내용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RIF 정부의 통치방식이 언급된 부분에서 일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대체로는 RIF 정부기관원들과 Goodwill이 담담한 목소리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10. 녹음 내용은 곧 해외 언론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배포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RIF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졌다. RIF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요컨대 RIF 정부기관원들이 Goodwill을 납치하여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하였거나 또는 살해하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루머일 뿐이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11. 해당 언론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어떠한 경로로 그러한 녹음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FRS 정보기관이 RIF 대사관을 상시적으로 도청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번 녹음 파일도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FRS 정부는 처음에는 도청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점점 커지자 FRS 정부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2. 녹음 경위와 관련하여 FRS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FRS 내에서 반 RIF 운동이 확산되어 이를 주도하고 있는 RIF 인사들에 대한 신체적 위협도 최근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FRS 사법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안전확보와 테러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7일 Goodwill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FRS 경찰 고위간부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 날 RIF 대사관 방문 계획을 알리며 혹시 있을지 모를 위급상황을 설명하였다. 특히 대사관 내에서 공관 직원들과 자신간에 말다툼과 물리적 충돌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Goodwill의 설명이었다.

13.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간부는 5월 7일 다음과 같이 Goodwill에게 설명하였다.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기는 참 힘들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면 내일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약 대사관 내로 들어가면 우리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없다. 대사관 내에는 우리 경찰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래도 내일 가야하고, 신체적 위협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 그러면 우리 외교장관이 RIF 대사에게 곧바로 연락하겠다.”

14. 그 다음 날인 5월 8일 오후 Goodwill은 예정대로 대사관에 들어갔다. 영사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Goodwill은 곧바로 몰래 어제 대화한 FRS 경찰 간부에게 전화하였다. 그러나 전화통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곧바로 RIF 대사관 직원 및 RIF 본국에서 파견되어 온 정부기관원들과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Goodwill의 전화가 FRS 경찰 간부와 연결된 상황에서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해당 경찰관이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전날 대화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한 경찰관은 곧바로 이 내용을 자신의 전화기에 녹음하였다.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을 그 다음 날인 5월 9일 FRS 외교부 및 정보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15. 그러나 해당 녹음만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단정짓기 힘들고, 또한 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파장을 고려하여 FRS 정부는 해당 녹음 내용을 공표하지 않

고 있다가 Goodwill 실종이 2주째로 접어들자 그 소재 추적을 위하여 모든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녹음 내용도 일단 공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6. 이에 대하여 RIF 정부는 여러 정황상 RIF 대사관에 대한 FRS 정부의 광범위한 도청 사실이 공공연하게 확인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령 FRS 정부의 공식 설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국 대사관에 대한 도청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17. 그리고 RIF 정부는 Goodwill의 소재에 대하여는 자신들도 아는 바가 없으며, 대사관 방문 이후 대사관을 떠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Goodwill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자신들도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다수 해외 언론들은 Goodwill이 사실상 납치되어 모처에 구금되어 있거나 RIF 본국으로 비밀리에 강제 송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8. 이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국내외 압력이 점증하자 FRS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FRS 사법당국은 필요하다면 RIF 정부담당자 및 FRS 소재 RIF 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도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의 범위 내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천명하였다. RIF 정부기관 담당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RIF 외교관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방침에 따라 양국간 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RIF는 FRS의 도청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국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외교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도청과 조사는 비엔나 협약과 이에 상응하는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이다.

19. FRS 정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18년 6월 2일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RIF의 참사관과 서기관이 출국을 시도하였다. William Swadling 참사관과 James Taser 서기관은 Kimberly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직전 FRS 경찰에 의해 출국이 저지되어 공항 밖으로 인도되었고 RIF 대사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참사관과 서기관은 자신들의 탑승이 저지되자 그 이유를 묻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기는 했으나 그 외에 특별히 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거를 하지 않아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다시 RIF 대사관으로 복귀하였다.

20. FRS 정부는 Goodwill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은 Goodwill의 생명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당분간 FRS 역내에 머무르며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21. 또한 FRS 정부는 RIF에 대해 Goodwill의 협박, 납치 혐의가 있는 RIF 정부기관원들의 인

도를 요청하였다. FRS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대부분 FRS 영역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다른 목적으로 FRS에 입국한 이후 자국 대사관을 이용하여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 행위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FRS 국내법을 위반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외교직원이 아닌 이들에 대하여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FRS 정부의 입장이다. FRS 정부에 따르면 이들의 인도 시까지 Goodwill 사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RIF 참사관과 서기관에 대한 FRS 사법당국의 수사 협조요청은 필요하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2. RIF 정부는 FRS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비엔나 협약 및 관련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역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FRS 정부는 이를 일종의 임시적 차원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s)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FRS 정부는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RIF 정부기관원 2인을 FRS로 인도하여 준다면 상기 참사관과 서기관의 출국을 허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FRS와 RIF가 별도의 양자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FRS의 주장에 대해 RIF는 사실상 외교관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비엔나 협약 및 1980년 테헤란 주재 미대사관 인질사건¹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확인한 법리에도 위반하는 조치임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FRS 정부는 이 역시 일종의 대항조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23. 2018년 6월 5일 FRS 정부는 본국으로 향하던 RIF 대사관의 외교행랑을 개봉하였다. 해당 외교행랑에 Goodwill의 시신이 들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결과였다. FRS 정부는 제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해당 제보가 제공된 시기와 방식을 밝혔다. FRS 경찰은 Kimberly 국제공항에서 RIF 외교행랑 담당자에게 해당 외교행랑에 중요한 범죄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 개봉을 요구하였다. RIF 담당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외교행랑을 FRS 경찰에 내어 주었다. 이 담당자는 RIF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으로서 주로 대사관 차량의 운전과 물자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24. 한편 RIF 대사관 주변의 광범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FRS 정부는 2018년 7월 2일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연일 반정부시위가 이어지는 RIF 대사관 주변의 경비와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FRS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대사관의 "존엄성 훼손 (impairment of dign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FRS 외교부 대변인은 밝힌 바 있다. RIF 대사관 주변에 보다 많은 CCTV를 설치한 것은 이 대사관에 대한 경비 수요가 다른 대사관에 비하여 점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CCTV가 눈에 잘 띄지 않은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RIF 대사관의 존엄에

¹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ICJ Judgment (May 24, 1980)

대한 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FRS 외교부 대변인은 밝히고 있다. CCTV 설치 지역을 모두 고지할 의무는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없다는 것이다.

25. RIF는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자국 외교직원의 출국이 연기되고 FRS 정부의 조사가 확대되는 등 일련의 사태로 RIF 대사관의 정상적인 업무가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RIF 대사관 주변의 반 RIF 시위 격화로 대사관과 대사 관저 주변을 경비하기 위한 사설경비 회사를 고용하였고 이로 인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반 RIF 보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및 언론 접촉 비용도 지출되었다. 일련의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되었다. 자료 번역과 관련자 통역 역시 비용 지출이 필요하였다.

26. FRS 역시 금전적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RIF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의 번역 및 관련자의 통역에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Goodwill 실종 사건 이후 격화된 반 RIF 시위대의 RIF 대사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들의 치료를 위하여 상당액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27. 양국간 분쟁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두 나라는 이 문제를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양국은 특별협정 (*compromis*)을 체결하여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9년 4월 18일 현재 RIF와 FRS를 당사국으로 하는 ICJ 분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ICJ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여러 절차적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ICJ의 관할권에 대하여 양국간 다툼은 없다.

RIF는 이 ICJ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청구를 제출하였다:

- ① FRS의 조치는 외교공관에 대한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임.
- ② RIF 외교직원의 출국 제한은 외교관에 대한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임.
- ③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다른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의 신체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임.
- ④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타인의 범죄인 인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외교직원에 대한 간접적인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

법 위반임.

- ⑤ CCTV 설치를 통한 RIF 대사관 활동의 감시는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하고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하여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 위반임.
- ⑥ 그간 다양한 경로로 RIF 국내정책을 비판하고, FRS 내 RIF 반정부단체를 지원하며, Goodwill 실종에 대하여 RIF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유엔 헌장 제2조제7항에서 명문화하고 국제관습법이 확인하고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위반임.

이러한 주장과 함께 RIF는 FRS에 대하여 해당 외교직원의 신속한 출국 허용,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2,000,000 USD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할 것을 ICJ에 요청하였다.

한편 FRS는 ICJ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과 청구를 제시하고 있다:

- ①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FRS 정부는 RIF 대사관에 대한 도청이나 여타 방식으로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7조 및 국제관습법 위반은 발생하지 아니함. 예비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됨.
- ②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외교직원 2인에 대하여 FRS 사법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FRS 역내에 체재하고 있음.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이와 관련된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아니함. 특히 문제의 상황이 발생한 공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로 비엔나 협약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함. 예비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됨.
- ③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한 여러 조건을 RIF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RIF 외교직원의 신체적 자유가 속박되거나 제한된 적이 없었음. 따라서 비엔나 협약 제29조와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 예비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됨.
- ④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RIF 외교직원의 출국을 위한 여러 조건을 RIF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RIF 외교직원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가 제기된 바 없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었고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음. 예비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됨.

- ⑤ RI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함. CCTV 설치는 RIF 공관에 대한 경비와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이와 관련되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 예비적으로 설사 해당 협약과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FRS 정부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됨.
- ⑥ FRS 내 RIF 반정부단체의 활동은 FRS와 관련이 없으며, 유엔 총회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국제인권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표명하는 것이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지 아니함. 오히려 Goodwill의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RIF 정부기관원들의 FRS 영역 내 활동은 FRS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그리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RIF 외교직원들은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함.

FRS는 RIF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상기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채택하여 줄 것을 ICJ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FRS는 자신이 입은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ICJ가 RIF에게 총 1,500,000 USD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 나아가 FRS는 ICJ가 RIF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도 함께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